

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17. 12. 7.
행정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17년 11월 20일, 마포구청장
- 나. 회부일자 : 2017년 11월 20일
- 다. 상정일자 : 제216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행정건설위원회(2017년 12월 7일)
상정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□ 제안설명자 : 기획예산과장 이준범

가. 제안이유

「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장애인 차별적 용어를 정비하고, 용어 및 띄어쓰기 등 문구를 정비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제5조제1항의 장애인 차별적 용어 정비
-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용어 및 표현 등 정비

3. 검토보고 (전문위원 유준상)

○ 본 개정조례안은

장애인 차별적 자치법규 정비 및 「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」 제5조제1항에 따라 “폐질등급”을 “장애등급”으로 변경하고,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용어 및 표현 등 문구를 정비하고자하는 것임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요지 : 없음

8. 기타사항 : 없음